

미국의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개시의 평가와 시사점

김영귀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ygkim@kiep.go.kr, Tel: 3460-1188)

박혜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3460-1029)



차 례 ● ● ●

1. 한국산 냉장고 제조건의 주요 내용
2. 미국 상무부 조사개시의 영향 및 평가
3.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지난 2011년 4월 19일 미 상무부(U.S. DOC: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산 하단냉동고형(Bottom Mount)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는 한국 대기업들의 가전시장 잠식에 대한 미국 산업계의 우려와 한국의 불충분한 시장개방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국정부의 저성장 고실업 상황 극복을 위한 대책의 결과로 보임.
- ▶ 이번 제소는 1986년 이후 25년 만의, 미국의 우리나라 가전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이며, 최초의 상계관세 제기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냉장고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가전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우리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상계조치가 가능 보조금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소는 향후 산업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임.
- ▶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부정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반덤핑 피소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역량 강화 및 피소 관련 정보 공유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녹색산업과 원천기술을 포함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에 대해 지원대상, 사업홍보, 정책펀드 운용방향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 한국산 냉장고 제조건의 주요 내용

가. 배경

- 지난 2011년 4월 19일 미 상무부(U.S. DOC: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미국 가전제품사인 월풀(Whirlpool)이 한국산 하단냉동고형(Bottom Mount) 냉장고¹⁾로 인해 덤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상계관세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임.
- 이번 제소는 한국 대기업들의 가전시장 잠식에 대한 미국 산업계의 우려와 한국의 불충분한 시장개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월풀은 청원서에서 삼성과 LG 등 한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자국시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미국 산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²⁾
- 우리나라의 대미 냉장고 수출은 2010년 기준 8.7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냉장고 수출대비 약 3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냉장고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력시장임.
- 특히 최근 미국시장에서는 고급형 냉장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삼성과 LG는 신규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의 고급형 냉장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³⁾

표 1. 냉장고 대미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전 세계			미국 수출		
	냉장고 전체	완성품	부품	냉장고 전체 (미국/전 세계)	완성품	부품
2007	1,798	1,599	199	452(25.1%)	444	8
2008	1,862	1,649	213	654(35.1%)	645	9
2009	1,784	1,521	263	628(35.2%)	620	7
2010	2,318	1,995	322	868(37.4%)	856	13

자료: 지식경제부.

- 1) 현재 시판되고 있는 냉장고는 크게 상단 냉동고형(TMF: Top Mounted Freezer), 양문형(SBS: Side Mounted Freezer or Side by Side Refrigerator), 하단 냉동고형(BMF: Bottom Mounted Freezer), 프렌치 도어형(FDR: French Door Refrigerator), 1도어형(Single Door-Internal Freezer)으로 구분되며, 이번 제소 대상은 하단 냉동고형 중 프렌치도어 방식의 제품임.
- 2) The Wall Street Journal, 2011년 3월 31일자.
- 3) 고급형인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의 북미시장 규모는 1년에 약 30억 달러로 추산됨(Raymond James&Associates).

- 이와 같이 한국산 냉장고의 수출증가로 2010년 기준 미국 냉장고 시장⁴⁾에서 삼성, LG 냉장고의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58.7%에 달하는 반면, 월풀은 8.5%를 기록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였음.⁵⁾
- 이에 월풀은 삼성·LG가 정상가격 이하로 냉장고를 판매하여 자사 및 해당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으며 한국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이러한 덤핑 판매에 일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원서를 제출함.

나. 주요 내용

- 월풀은 삼성과 LG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했다고 주장함.
- 제조대상 업체는 삼성전자, LG전자 2개사이며, 제조대상 품목은 한국산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Bottom mount combination refrigerator-freezers)와 부품(certain assemblies thereof) 11개 품목⁶⁾임.
 - 삼성, LG 모두 국내생산뿐 아니라 멕시코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제조대상은 한국산 및 멕시코산 모두 포함함.
- 덤핑 마진과 관련하여 월풀은 삼성·LG가 미국으로 냉장고 수출 시 정상가격⁷⁾보다 34~62%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덤핑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함.
 - 이러한 덤핑 판매로 월풀은 고용 규모 감소, 수익 악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산 냉장고와 미국의 산업피해는 명백한 인과관계(casual link)가 있다고 주장함.

표 2. 월풀이 주장하는(Alleged) 덤핑 마진

국가별	덤핑 마진
한국산	34.16~61.82%
멕시코산	23.10~183.18%

자료: 월풀(Whirlpool) 청원서.

- 산업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미국 내 냉장고의 가격 하락을 선도하였으며, 이 같은 과도한 가격경쟁은 향후 미국 전자산업뿐 아니라 미국경제에도 커다란 위협(threat)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4) 고급형 냉장고(프렌치 도어형) 시장에 한함.

5)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참고.

6) 제조대상 품목(HS Code): 8418.10.0010, 8418.10.0020, 8418.10.0040, 8418.10.0040, 8418.21.0000, 8418.21.0020, 8418.21.0030, 8418.21.0090, 8418.99.4000, 8418.99.8050, 8418.99.8060.

7) 수출국 국내가격.

표 3. 냉장고 유형별 시장 평균가

(단위: US 달러)

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상단 냉동고형	482	487	475
양문형	1,076	1,075	942
하단 냉동고형	1,502	1,491	1,442

자료: 월풀(Whirlpool) 청원서.

- 그 밖에도 청원서에서 월풀은 미국은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LG전자는 멕시코 생산 라인을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으며, 삼성전자도 국내에서 생산한 일부 고급 가전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해 왔다고 주장함.

■ 또한 한국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계조치가능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함.

- 제소대상이 된 보조금은 ① 수출입은행 등에 의해 제공된 수출금융지원, ②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③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녹색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보조금임.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 제공한 단기수출신용이나 수출 팩토링 등 금융 지원이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함.
- 광주시와 창원시 등이 지급한 생산시설 보조금이 삼성과 LG뿐 아니라 해당 기업들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기업들에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보조금이 삼성 등에 승계되었다고 주장함.
- 한국의 재벌은 중소 부품공급업체들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당수 부품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LG의 통제 아래 있음을 지적함.
-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생산시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⁸⁾ 해당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부품공급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재벌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승계되었다는 월풀의 주장은 미 상무부에 의해 조사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인력개발비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신성장동력산업 기금과 녹색펀드(green fund) 보조금을 문제 삼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 연구 인력개발비의 20%(중소기업은 30%)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함.⁹⁾
-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이 첨단기술 및 산·재생에너지 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등을 위한 산업에 기금을 통한 대출, 녹색펀드를 통한 대출 또는 무상지원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함.

8) 과거 철강과 제지산업에서 지역적 세금감면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바 있음.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동법 제25조 2의 대상시설은 에너지 절약형 시설, 중유재가공 시설, 절수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부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임.

표 4.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 지원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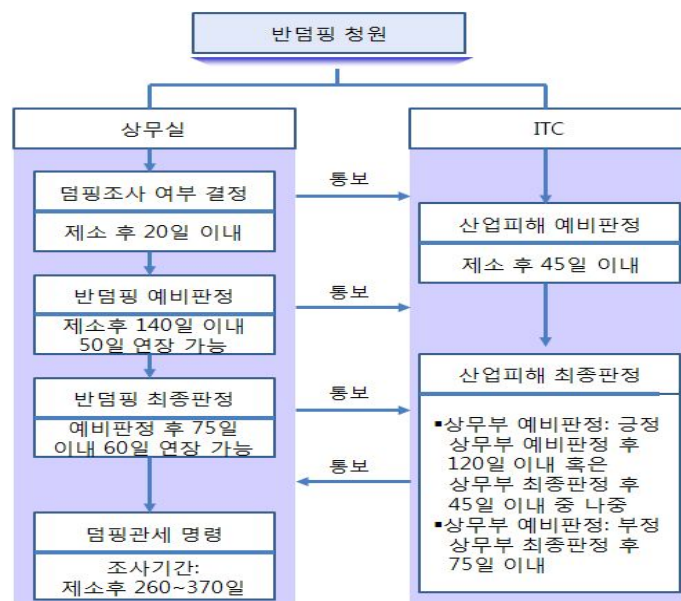
구분	대상기술
신성장동력산업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SW,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식품산업, 고도물처리산업
원천기술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자원, 전력, 원자력, 지식정보보안, 청정기반, 화학공정, RFID-USN, U-컴퓨팅, 화합물의약품, 우주,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 향후 절차

- 반덤핑·상계조사는 각각 미국 통상법의 절차를 따라 예비판정과 최종판정, 정기적 검토¹⁰⁾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임(그림 1 및 그림 2 참고).
-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절차는 청원서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출된 뒤 ①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실 통보 및 조사 착수, ② 상무부의 조사개시 결정, ③ ITC의 피해 예비판정, ④ 상무부의 덤핑/보조금 예비판정 및 상계관세를 책정, ⑤ 상무부의 덤핑/보조금 최종판정, ⑥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⑦ 상무부의 덤핑관세/상계관세 부과 순으로 진행됨.
- 미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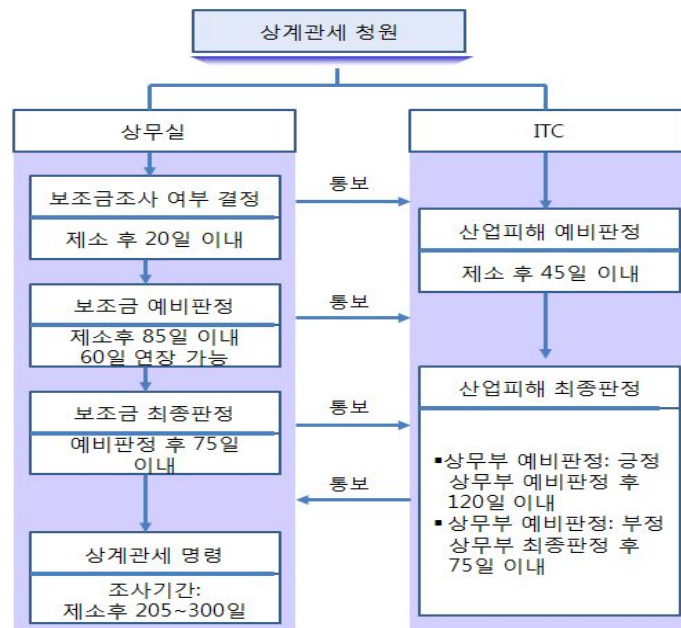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반덤핑 조사 및 판정절차



자료: 미국 통상법과 조석홍, 『국제통상법』을 필자 정리.

10)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5년 후 일몰제심(Sunset Review)을 함.

그림 2. 미국의 보조금 조사 및 판정절차



자료: 미국 통상법과 조석홍, 『국제통상법』을 필자 정리.

- 현재 월풀의 냉장고 제소건은 미 상무부의 본격적인 조사 착수에 앞서 무역위원회 예비회의(ITC Preliminary Conference)를 마친 상태로 예비회의에서는 제소자 및 피소자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견지하고 상품정보 및 사건개요를 공유하였음.
- 향후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일정 간에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적으로는 4월 말 또는 5월 중 미 상무부가 조사 관련 정보요청서를 우리 정부에 요청할 것이며, 7월경 현지 실사에 이어 9월~10월경 최종판정이 이루어 질 예정임(표 5 참고).

표 5. 냉장고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관련 일정 및 향후 일정(안)

날짜		주요 내용
반덤핑	상계관세	
2011. 3. 30	2011. 3. 30	월풀사가 미 상무부에 청원서(petition) 제출
2011. 4. 19	2011. 4. 19	미 상무부 조사 개시
	2011. 4월~5월 중순	미 상무부 보조금 관련 질의서 우리정부에 송부
2011. 5. 16	2011. 5. 16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예비판정*
2011. 9. 6	2011. 6. 23	미상무부 예비판정**
	2011년 7월경	미 상무부 현지실사
2011. 11. 21	2011. 9. 6	미 상무부 최종판정**
2012. 2. 4	2011. 10. 21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2. 1. 11	2011. 10. 28	관세부과****

주: * 무역위원회의 부정판결 시에는 사건 종료됨.

** 미 상무부 예비판정 일자는 진행상 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미상무부의 긍정 판정 시에만 해당

****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긍정 판정 시에만 해당

자료: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2. 미국 상무부 조사개시의 영향 및 평가

■ 이번 조사개시는 미국 산업계의 시장잠식에 대한 우려와 미국정부의 저성장·고실업 상황 극복을 위한 대처의 결과로 보임.

- 월풀은 삼성과 LG가 수입에서 보호되어 있는 자국시장에서 확보한 이윤을 기반으로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충분히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과 미국 내에서 이윤확보가 아닌 점유율 확보를 위해 비정상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함.
- 미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세적인 수출확대 정책과 함께 무역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
- 미국은 2004년 고용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을 비롯하여 2011년 2월 일자리창출위원회 발족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며,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선거를 감안한다면 실업을 해결을 위한 미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됨.
- 미국 USTR이 발표한 2011년 통상정책 어젠다(Trade Policy Agenda)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수출진흥 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과 함께 강력한 규칙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통한 미국 권익보호를 포함하고 있음.

■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은 2010년 7월 현재 총 119건으로 반덤핑 93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4건, 상계관세 0건, 세이프가드 22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78.2%)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이 국내 가전제품에 대해 제소한 것은 1986년 한국산 칼라TV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후 25년 만이며, 가전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는 부과된 전례가 없음(표 6 참고).

표 6. 국내 가전제품 규제 현황

국가	연도	품목	제소사항	판정결과
미국	1983	칼라TV	반덤핑	반덤핑
	1986	칼라TV 브라운관	반덤핑	반덤핑
EU	1986	전자레인지	반덤핑	제소철회
	1992	칼라TV	반덤핑	반덤핑
	1993	전자레인지	반덤핑	반덤핑
	2005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반덤핑
캐나다	1981	전자오븐	반덤핑	반덤핑
	1985	칼라TV	반덤핑	무피해
아르헨티나	1994	전자레인지	반덤핑	가격인하(PU)
	1996	세탁기용 전기모터	반덤핑	가격인하(PU)
멕시코	1993	냉장고	반덤핑	조사철회
	2000	냉장고	반덤핑	무혐의
칠레	2000	세탁기 및 냉장고	반덤핑	무혐의
호주	2002	자동세탁기	반덤핑	반덤핑
	2004	냉장고	반덤핑	반덤핑
뉴질랜드	2000	냉장고	반덤핑	반덤핑
	2000	세탁기	반덤핑	반덤핑

자료: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보도자료.

- 이번 냉장고 제소건은 현재 조사개시 단계로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향후 긍정 판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 우리나라의 냉장고 수출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현재 미국시장에서 삼성, LG 냉장고는 개당 1,480~1,660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미국시장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표 7 참고).
- 포스코 철강의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1999년부터 대미 철강수출을 중단한 바 있음.

표 7. 미국 내 고급형(프렌치 도어형) 냉장고 평균 판매가격

(단위: US 달러)

업 체	2010년 평균가격	덤핑관세 부과 후(예상)
삼성전자	1,665	2,000 이상
LG전자	1,484	2,000 이상
월풀	1,324	1,324

자료: 각 업계.

- 반덤핑 긍정 판정 이후 WTO에 다시 제소할 수는 있으나 분쟁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및 비용이 상당하고, WTO의 판정결과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우리 가전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함.
- 따라서 이번 반덤핑 조사가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특히 최근 미국의 대 세계 반덤핑/상계관세 수입규제 현황(표 8 참고)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조사개시된 사건 중 긍정 판정으로 관세가 부과된 건수의 비중이 최근 2~3년간 높아지고 있음.
- 즉 미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 부정 판정으로 종결되기 어려워진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표 8. 미국의 연도별 수입규제 부과 현황

(단위: 건, %)

연도	조사개시 (Initiation)	예비판정 (Prelim)	최종판정 (Final)	관세부과 (Duty Order)	비중 (관세부과 결정 /조사개시)
반덤핑	308	245	239	167	54.2
2000	46	37	36	30	65.2
2001	77	65	64	30	39.0
2002	34	15	14	12	35.3
2003	37	23	23	16	43.2
2004	26	26	26	17	65.4
2005	13	9	9	6	46.2

표 8. 계속

연도	조사개시 (Initiation)	예비판정 (Prelim)	최종판정 (Final)	관세부과 (Duty Order)	비중 (관세부과 결정 /조사개시)
2006	7	7	5	2	28.6
2007	28	27	27	21	75.0
2008	16	16	16	15	93.8
2009	20	18	18	17	85.0
2010	3	2	1	1	33.3
상계관세	72	66	65	46	63.9
2000	7	7	7	6	85.7
2001	18	18	18	10	55.6
2002	4	3	3	2	50.0
2003	5	2	2	2	40.0
2004	3	3	3		0.0
2005	2	2	2	2	100.0
2006	3	3	3		0.0
2007	7	7	7	7	100.0
2008	6	6	6	6	100.0
2009	14	13	13	10	71.4
2010	3	2	1	1	33.3
총합계	380	311	304	213	56.1

자료: 미국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이번에 제소된 내용에서 우리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상계조치가 가능 보조금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판단됨.

- 이번 제소는 미국이 우리나라 가전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사상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예비조사의 결정에 따라 향후 다른 가전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표 9 참고).
- 또한 우리 정부가 신성장동력에 올해까지 총 8.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 금융 및 세제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조사 결과가 우리의 핵심 산업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¹¹⁾

표 9. 우리나라의 상계관세 피제소 사례

연도	품 목 명	제소근거	조사결과/2010.11 현재	제소국
1999	강철후판	반덤핑/상계관세	AD/CVD(2000.1)	미국
1999	H-형강	반덤핑/상계관세	AD/CVD(2000.7)	미국
1999	PET Chip	반덤핑/상계관세	AD(2000.11.30)	EU
1998	스테인리스 후판코일	반덤핑/상계관세	AD(1999.4)	미국
1998	스테인리스 박판코일	반덤핑/상계관세	AD/CVD(1999.7)	미국
1998	산업용팬벨트	반덤핑/상계관세	-	미국

11) 지경부 보도자료 (2011년 4월 14일)

표 9. 계속

연도	품 목 명	제소근거	조사결과/2010.11 현재	제소국
1998	폴리에스터합성	반덤핑/상계관세	AD(1998.4)	EU
1992	냉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AD/CVD(1993.7)	미국
1992	철강판재류	반덤핑/상계관세	AD/CVD(1993.7)	미국
1992	플로트유리	반덤핑/상계관세	-	호주
1988	산업용 팬벨트	반덤핑/상계관세	-	미국
1986	금속제 취사도구	반덤핑/상계관세	AD/CVD(1987.1)	미국
1985	送電鐵柱	반덤핑/상계관세	-	미국
1985	석유시추장비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미국
1984	銅地金	반덤핑/상계관세	AD(1991.5)	미국
1984	용접銅網	상계관세	제소기각	미국
1978	자전지용 타이어튜브	반덤핑/상계관세	AD(1978.10)	미국
2000	NBR합성수지	상계관세	종결	인도
2001	냉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종료	미국
2002	DRAM	상계관세	종료(2008.8)	미국
2002	DRAM	상계관세	종결	EU
2004	하이닉스DRAM	상계관세	AD(2006.1.27)	일본
2009	디젤엔진부품	상계관세	조사종료(9.21)	미국

자료: 무역위원회.

■ 특히 WTO 회원국들의 보조금 협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DD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R&D 보조금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R&D 지출에 대한 WTO 최대 분쟁사례는 2004년 10월 시작된 EU와 미국의 항공기 산업보조금 분쟁이며, 에어버스와 보잉사가 각각 EU와 미국으로부터 2천억 달러와 230억 달러에 해당하는 불법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국을 WTO에 제소하였음.
- 사안의 복잡성과 추가제소 등으로 인해 2010년에 이르러서야 WTO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0년 6월 30일 미국의 EU 제소건은 미국의 승소로, 2011년 3월 31일 EU의 미국 제소건은 EU의 승리로 판결남.
- 본 건은 2001~06년간 유럽시장을 비롯한 호주, 중국, 인도 등의 시장에서 보잉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에 대해 미국이 EU의 보조금을 문제 삼은 데서 시작되었음.
- 항공기 R&D 분쟁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 미국은 자국이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며 과거 허용보조금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던 R&D 보조금과 환경보조금의 영역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음.

3. 시사점

■ 먼저 반덤핑 조사에 대비하여 월풀이 제시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계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부정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월풀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덤핑 근거, 덤핑으로 인한 기업피해, 산업피해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 잘못된 정보 또는 과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부각시켜 월풀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삼성·LG의 제품 모두 항상 월풀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바, 가격인하를 선도한 것은 오히려 월풀이라는 점을 강조
- 청원서에 비교대상으로 언급된 LG전자의 냉장고는 6년 전 단종된 모델임¹²⁾을 밝힘.
- 청원서에서는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월풀 냉장고 판매가 감소한 것은 한국산 냉장고가 디자인, 기술,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제품개발에서 우위를 지니기 때문으로 가격경쟁의 문제가 아님. 따라서 덤핑을 할 유인이 없음).
- 미국 내 중립적인 전문가의 증언 등을 통해 최근 냉장고 시장동향, 소비자의 선호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
- 월풀 청원서의 비논리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실사조사에 대비한 자료 준비, 덤핑 마진 재산정, 업계 및 정부간 긴밀한 협조 등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 대해 단계별¹³⁾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향후 반덤핑 피소에 대비하여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 및 피소 관련 정보공유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우리 기업은 수입규제 피소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관행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 수입규제 제소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큰 요인임.
-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반덤핑 피소업체에 대한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고용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수입규제 사전경보 시스템(마진분석 시스템, 주기적인 수출통계 분석)을 강화해야 함.
- 기업 차원에서도 업체별로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덤핑 피소 대응요령 숙지, 반덤핑 피소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사례 공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자구적 노력이 필요함.

■ 한편으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녹색산업과 원천기술을 포함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 우선 지원대상 선정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대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이 곧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보조금으로 인식될 우려가 높음.
- 이번 조사착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이 곧 재벌에 대한 간접지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¹⁴⁾

12) 『경향신문』, 4월 21일 기사 인용.

13) 덤핑 조사는 1) 수출국의 정상가격 조사, 2) 수출가격 조사, 3) 덤핑 마진을 산정(정상가격 대비 수출가격), 4) 수입국 산업 및 제조업체의 피해 확인 등의 순으로 이루어짐.

14)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증진은 대기업과 달리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높이지 않아 상대국 기업들이 산업피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산업정책을 설명하거나 홍보할 때 지원 목적을 무역 중립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증진이나 수입대체 등의 성과 언급을 자제해야 함.
- 이번 월풀의 청원서에서 나타나 있듯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들이 보도자료, 공고문, 신문기사 등이었으며, 과도한 실적홍보 등은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신성장 정책펀드 등을 통한 산업육성은 R&D 단계에 집중하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하여 민간금융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상용화 단계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기술이 시장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는 경우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보다 위험이 높은 R&D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KIEP**